

방문요양 방문목욕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5.01.01.)

★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306,400원	2,083,400원	1,485,700원	1,370,600원	1,177,000원

※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.

★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원	150분 이상	49,160원
60분 이상	24,580원	180분 이상	55,350원
90분 이상	33,120원	210분 이상	61,670원
120분 이상	42,160원	240분 이상	68,030원

★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2025년 추가	2025년 본인부담금
60분미만(차량이용 차량내)	69,180원	10,377원
60분미만(차량이용 가정내)	62,380원	9,357원
60분미만(가정내)	38,950원	5,843원
60분이상(차량이용 차량내)	86,480원	12,972원
60분이상(차량이용 가정내)	77,970원	11,696원
60분이상(가정내)	48,690원	7,304원

★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6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)	9 % , 6 %

★ 방문요양 급여 심야·공휴일가산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.

- ①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,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%, 공휴일 급여비용의 50%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급여비용의 30%, 50%를 가산한다.
- ③ 심야 ·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★ 이용료 납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(보호자)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.
-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(으)로 20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